

## 부당한 표시·광고 신고서

※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고 인	성명(*)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신고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태림 담당변호사: 하정림, 김도현, 안수민)	생년월일(*)		
	주소(*)	서울 성동구 독성로 1나길 5 헤이그라운드 {대리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902호(삼성동, 남경센터빌딩)}			
	연락처	전화번호(*)	대리인: 02-501- 6713	휴대폰	
		팩스번호	대리인: 02-501- 6712	이메일	solutions@forourclimate. org (대리인 hajr@tll.co.kr)
피신고인과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소비자 <input type="checkbox"/> 행정기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회단체 <input type="checkbox"/> 경쟁사업자 <input type="checkbox"/> 구성사업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				
피 신 고 인	사업자명(*)	에스케이이엔에스 주식회사	대표자 성명	유정준, 추형욱	
	주소 또는 전화번호(*)	서울 종로구 종로 26(서린동) 02-2121-3114	관련부서및담당자		
신 고 대 상	표시·광고 매체(*)	홈페이지, 유튜브 등	표시·광고일자(*)	2021. 3. 30. ~ 현재	
	표시·광고의 내용(*)	☞ 표시·광고물에 표현된 내용 중 위법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기재하여 주시고, 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시 · 광 고	표시·광고의 내용(*)	별지. 부당한 표시·광고 신고 사유서 참조			

표시·광고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이유 (*)	신고서와 함께 제공되는 「부당한 표시·광고 신고서 작성안내」에 따라,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급적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시고, 기재할 공 간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부당한 표시·광고신고 사유서 참조
첨부 자료	신고 대상 표시·광고물 또는 그 사본(*)
신고인 [ ] 공개 신분공개 [ ] 비공개 동의여부 [ ] 사건 조치 후 공개	

\*별지 2호 규정(제1항 단서, 제2호 제1호 및 제2호 제2항 단서, 제3호 제1항 단서, 제4호 제1항 단서)에 따른다.

2021 년 12 월 22일

신 고 인: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신고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태림

담당변호사 한정림



담당변호사 김도현



담당변호사 안수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 부당한 표시·광고 신고 사유서

신 고 인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서울 성동구 뚝섬로1나길 5(성수동1가, 헤이그라운드)

신고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태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902호(삼성동, 남경센터빌딩)  
담당변호사 한정림, 김도현, 안수민  
(전화: 02-501-6713, 팩스: 02-501-6712)

피신고인 에스케이이엔에스 주식회사(110111-1632979)  
서울 종로구 종로 26(서린동)  
대표이사 유정준, 추형욱

### 신 고 취 지

신고인은 피신고인을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위반 혐의로 신고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위법한 행위를 엄단하고, 향후 이 같은 위법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 고 이 유

## 1. 당사자의 지위

신고인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이하 ‘신고인’이라 합니다)은 기후변화, 대기오염, 생태계의 보전 기타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연구, 정책제안, 교육 및 홍보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소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단법인 기후솔루션)}.

피신고인 에스케이이엔에스 주식회사(이하 ‘피신고인’이라 합니다)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배출권 및 신재생에너지 인증서의 거래 사업, 집단 에너지 사업 등을 주요 영업활동으로 하는 법인입니다{소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스케이이엔에스 주식회사)}.

## 2. 신고사실의 요지: 표시·광고의공정화에 관한법률위반

피신고인은 2021. 10.경부터 현재까지 피신고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http://www.skens.com/>),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SKENSTV>), 블로그 등에 ① 이산화탄소가 제거된 LNG 생산, ②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기술(Carbon Capture and Storage, 이하 “CCS<sup>1</sup>”)은 상용화된 기술, ③ 천연가스 기반 ‘블루수소’를 이산화탄소 제거, 친환경 수소라고 표시·광고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였다.

---

<sup>1</sup>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기술이란 화석연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대기로 배출하기 전에 추출한 후, 압력을 가해 액체 상태로 만들어 지층 깊숙이 주입하여 저장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 3. 이 사건의 경위

#### 가. 피신고인의 ESG 경영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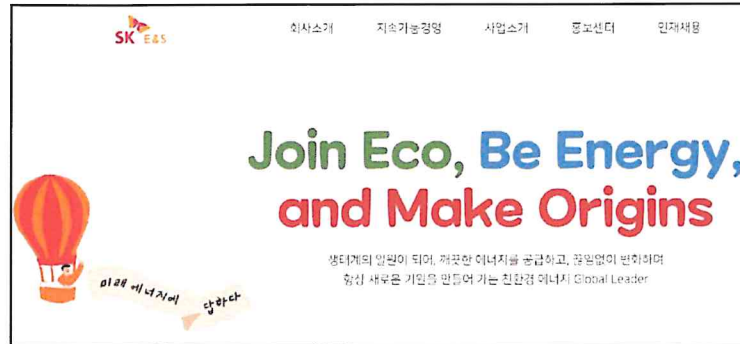
ESG(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경영이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비재무적 요소(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를 반영하는 기업의 운영 방식을 뜻합니다. 특히 기후변화가 전세계적 문제로 대두되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 CEO인 래리 핑크(Larry Fink)는 2020. 1.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 촉구와 더불어, ESG 경영사항을 투자결정에 반영한다는 취지를 강조하였고, 수출입은행 등 국내 기관투자자의 투자와 일반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서도 환경영향 등 ESG 요소가 실질적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일선 기업들은 프로젝트와 ESG 관련성 강조, ESG 성과 지표나 인증 획득을 홍보하여 투자확보와 수익확대를 도모하는 실정입니다.

피신고인과, 같은 모기업(에스케이주식회사, 이하 “SK 주식회사”) 아래 다수 SK 계열사들은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들로서, 정유, 석유화학, 가스 등 화석연료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ESG, 친환경 기업으로 이미지를 제고하였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sup>2</sup> 그 배경으로는, SK 주식회사와 계열사들이 ESG 경영방침을 적극 홍보해온 점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S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최태원 회장이 ‘ESG를 기업 경영의 새로운 핵심 축으로 삼겠다’고 하였고, 2020년에는 국내 최초로 8개 SK 계열사가 재생에너지 사용에 관한 RE 100<sup>3</sup>에 가입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sup>2</sup> “국내 기업 중 ESG에 관한 SK의 이미지는 가장 강렬하다. 2021년 1월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이 전국 대학생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가장 많은 36.8%가 ‘SK가 ESG 경영을 가장 잘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김영준 기자, “[ESG 경영 선도기업 | (10)SK그룹] 기업에 매력 입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파이낸셜 스토리”, 월간 중앙, 2021. 10. 17. 참조.)

<sup>3</sup>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입니다.

[피신고인의 홈페이지 메인 화면]



나. 피신고인의 호주 바로사(Barossa) 가스전 개발 사업의 확정

한편 피신고인은 2012. 6.경 미국 코노코필립스사(社), 호주 산토스사(社)로부터 호주 다윈 연안에서 300km 떨어진 바로사-칼디타(Barossa-Caldita) 가스전 중 바로사 가스전의 지분 37.5%를 인수하였습니다. 이후 피신고인은 매장량 평가, 인·허가 및 설계 작업 등 개발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2021. 3.경 바로사 가스전에 대한 최종투자 의사결정(FID)을 공표하였습니다. 피신고인은 위 바로사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 합니다)에 약 14억 달러(한화 약 1조 6천억 원)를 투자하여 2025년 1분기 경 LNG<sup>4</sup> 상업 생산을 개시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피신고인은 2025년부터 생산되는 연간 130만 톤의 LNG를 국내에 도입하고, 국내 도입물량의 일부는 LNG 발전에, 일정 부분은 수소 생산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소갑 제3호증 관련 기사).

특히, 피신고인은 보도자료와 광고를 통해, 이 사건 프로젝트는 1) 이산화탄소 배출 없는 LNG 생산, 2) 이산화탄소를 제거한 친환경 수소 생산에 활용

<sup>4</sup> 가스전에서 채취한 천연가스를 정제하여 얻은 메탄을 냉각하고 액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액화천연가스를 말합니다.

될 것이라는 취지를 중점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음 항에서 말씀드릴 것과 같이 ‘그린 워싱(Green-washing)’ 논란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 다. 이 사건 프로젝트에 대한 피신고인의 그린 워싱 및 허위 광고 논란

피신고인 회사의 모기업인 SK 주식회사 최태원 회장은 2020. 11월경, 해외의 모든 신규 석유 및 가스 투자를 중단하고 탄소배출량을 3분의 2로 감축하겠다는 ‘탈 화석연료’ 목표를 선언한 사실이 있습니다.<sup>5</sup> 그러나 피신고인은 그로부터 불과 4개월 후, 화석연료인 천연가스 개발을 골자로 하는 1조 6천억원 규모의 이 사건 프로젝트 최종투자의사결정에 이르러, 피신고인과 SK 주식회사 일각이 많은 경제지와 환경단체로부터 ‘그린 워싱(Green-washing)’<sup>6</sup>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sup>7</sup>

피신고인은 2021. 9.경 미디어데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프로젝트의 친환경성과 관련한 내용을 다시금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신고인의 광고는 이 사건 프로젝트의 LNG 생산과 이산화탄소 배출, CCS 기술의 확실성, 블루수소의 이산화탄소 배출 및 친환경성에 관한 실제적 진실과 다른 허위 또는 과장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들의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4.항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sup>5</sup> "South Korea's 'M&A king' SK Group pursues path away from fossil fuels", Financial Times, <https://www.ft.com/content/05117980-73f5-475f-b339-eafd71c671f1>

<sup>6</sup> 환경 파괴적인 기업이 친환경적인 기업인 것처럼 위장하여 거짓 선전하는 ‘위장 환경주의’를 뜻합니다.

<sup>7</sup> "South Korea's SK accused of greenwashing after LNG- U-turn", Financial Times, <https://www.ft.com/content/91285fc4-5c73-4fe1-99e7-43d9645e9209>

이에 많은 환경단체들은 피신고인의 광고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나, 피신고인은 소비자의 혼동을 유발하는 해당 광고를 계속 배포하고 있습니다.

## 라. 소결

신고인은 피신고인의 허위 광고로 인하여 많은 소비자들이 ‘친환경기업’으로서 피신고인의 사업에 우호적인 인식을 가지고 천연가스 및 향후 천연가스 기반 수소 제품을 직·간접적으로 소비하는 일에 경종을 울릴 필요를 인지하여 본 신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4. 피신고인에 대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 가. 관련 법령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2018. 12. 13.][법률 제15699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3. 3.][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관련 고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특정 광고의 ‘반진실성’,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을 요건으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 위원회는 환경 관련 세부 지침에서 아래와 같이 환경보호 관련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환경 관련 표시 및 광고의 기준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자가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환경 관련 표시 및 광고는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고, 그 예시로서 환경보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동 등 구체적, 사실적 근거를 갖추지 않으면 허위·과장광고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2016. 12. 23.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75호), V. 세부심사지침 1.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해당 지침을 위반한 것입니다.

□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시행 2016. 12. 23.]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75호, 2016. 12. 23., 일부개정]

#### V. 세부심사지침

##### 1. 사업자 자신에 관한 환경관련 표시·광고

사업자가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환경관련 표시·광고는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보호와 관련된 캠페인 등 환경보전 의지를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표시·광고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예 시>

- 사업자가 자신에 관하여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라고 광고하였으나 자신의 사업상 또는 사업외에 환경관련 단체를 지원하거나 기타 환경보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한 사실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사실적 근거를 갖추고 있지 않거나, 그러한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을 상쇄할 만큼 환경에 유해한 사업상 또는 사업외의 활동을 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허위·과장광고임

이하에서는 피신고인 광고의 요지를 살피고, 해당 광고가 소위 ‘반진실성’,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을 갖추었음을 말씀드리면서(이상 공통요건), 피신고인의 광고가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서 제시하는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이상 개별요건)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 나. 공통요건: 피신고인 광고의 요지

피신고인의 광고는 크게 ① 보도자료 배포 ② 유튜브 영상 광고를 이용한 광고로 나눌 수 있습니다.

##### 1) 피신고인 광고 유형별 내용

###### <보도자료 배포의 경우>

피신고인은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프로젝트를 언급하면서, CCS 기술을 이용해 천연가스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하여 ‘CO<sub>2</sub> Free LNG’ 사업을 실현한다고 하거나, ‘탄소중립 LNG’를 도입한다고 광고하였습니다(소갑 제4호증의 1 및 2 피신고인의 보도자료).

[소갑 제4호증의 1 피신고인의 보도자료 중 해당 부분 발췌]

**[SK E&S]** SK E&S, 자원개발 새역사... CO2 없는 친환경 LNG시대 연다  
등록일 2021.03.30

천연가스는 화석연료 중 가장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원이지만 생산 및 연소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일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SK E&S는 천연가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인근 해상 폐가스전에 저장하고, 나아가 CCS 기술 고도화를 통해 LNG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도 제거함으로써 'CO<sub>2</sub> Free LNG' 사업을 실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 [소갑 제4호증의 2 피신고인의 보도자료 중 해당 부분 발췌]

마지막으로 LNG 사업은 친환경성을 태풍 강화하기로 했다. CCS\* 기술을 기반으로 생산한 '탄소중립 LNG' 130만톤을 2025년부터 국내 최초로 도입하고, CCS 기술을 벌류제인 진반에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SK E&S는 2023년 600만톤, 2025년 1천만톤의 LNG를 공급하는 글로벌 메이저 사업자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피신고인의 광고를 정리하면, (i) 천연가스는 생산 및 연소(\*'연소'는 천연가스 발전을 의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일부 발생하는데 (ii) 피신고인은 CCS 기술을 활용하여 (iii) 이 사건 프로젝트는 이산화탄소 배출 없는 LNG 생산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허위·과장 내지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후술합니다.

#### <유튜브 영상광고의 경우>

피신고인은 “분리하면 블루된다! 너 묻으면 블루된다! 친환경 블루수소를 위한 CCS기술 1분만에 알아볼까요?”라는 제목의 광고 영상을 피신고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및 피신고인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위 영상은 피신고인이 천연가스(CH<sub>4</sub>)와 공기 중 산소(O<sub>2</sub>)를 고온고압의 수증기(H<sub>2</sub>O)와 반응시켜 수소(H<sub>2</sub>)를 생산하는 과정에 관한 것으로, (i) 이산화탄소(CO<sub>2</sub>)를 포집, 제거한, (ii) '친환경' 블루수소를 생산하는데, (iii) 이산화탄소를 포집, 액화, 운송하여 폐유전이나 폐가스전에 매립하는 'CCS 기술'은 상용화된 기술이라고 표시하였습니다.



## 2) 피신고인 광고 내용의 정리

피신고인의 보도자료 및 유튜브 영상광고의 내용을 정리하면 피신고인은,

- ① “탄소중립”의 방법으로 LNG를 생산할 것이고,
- ② CCS 기술은 상용화되어 있으며,
- ③ “이산화탄소 제거”로 “친환경” 블루수소를 생산할 것

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신고인의 이 사건 프로젝트 관련 LNG는 생산 및 액화 이외의 공정과 소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탄소를 발생시키는바, 탄소중립의 방법으로 생산될 수 없고, CCS 기술은 기술적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경제성에 비추어 상용화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블루수소는 이산화탄소가 제거된 친환경 원료라 볼 수 없습니다. 즉 피신고인의 광고는 실증 없는 허위·과장 광고 및 기만적 광고에 해당합니다.

## 3) 소결

이하에서는 위 2)항에서 정리한 사항이 반진실성,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을 갖추었음은 물론 귀 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개별 위반 유형에 해당

하여 피신고인의 광고가 허위·과장,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 다. 공통요건: 반진실성의 충족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피신고인의 광고 내용이 실증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소비자를 속이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위 피신고인의 광고는 실증적으로 거짓 또는 과장에 해당하는 내용이 다수 존재합니다.

##### 1) 이 사건 프로젝트 관련, ‘CO<sub>2</sub> Free LNG’, ‘탄소중립 LNG’ 부분의 허위성

가) 피신고인의 계획에 따르더라도, ‘생산공정’의 모든 배출량이 포집되지 않습니다.

피신고인은 ‘생산’으로 통칭한, 개발, 정제, 액화 단계에서 발생하는 350만 톤의 이산화탄소 가운데 일부인 약 210만톤을 포집하여 인근 해상가스전인 바유-운단(Bayu-Undan) 가스전에 저장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소갑 제6호증 의원 보도 자료). 그럼에도, 피신고인은 “천연가스 생산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CO<sub>2</sub> Free LNG’ 사업을 실현”할 것이라고 하거나, “CCS 기술을 기반으로 생산한 ‘탄소중립 LNG’를 도입”할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신고인의 CCS 기술을 활용 계획이 완전히 이행되더라도,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에 대비하여 포집, 제거되는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일부에 불과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CO<sub>2</sub> FREE’나 ‘탄소중립’, ‘친환경’ 표현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나) 피신고인의 계획은 ‘전(全) 과정’ 배출량의 극히 일부를 포집하는 데에 불과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프로젝트의 생산·액화·수송·기화·소비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연간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1,350만톤에 달하나, 피신고인이 포집 대상으로 삼은 생산, 액화 단계의 210만톤에 불과합니다(소갑 제6호증 의원 보도 자료).<sup>8</sup> 즉, 피신고인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가운데 16%만을 포집하고, 남은 84%는 대기 중 배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갑 제6호증 의원 보도 자료 중 해당 부분 발췌]

**< 바로사 가스전의 LNG value chain별 온실가스 배출량\* >**

(백만톤/연(MTPA))

구분	상류	중류			하류
		액화	운송	재기화	
배출량	2.0	1.5	0.3	0.1	9.6

\*출처 : Greenhouse Gas Assessment and Alternatives Analysis, ERM(글로벌 환경 자문사), '21. 10월  
 자료: 수출입은행(SK E&S에서 제출), 장혜영 의원실 재가공

**< SK E&S가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계획 >**

○ (감축계획 및 감축량) CCS 프로젝트를 통해 상류 및 액화단계에서 발생하는 CO<sub>2</sub> 1.31MTPA\* → 0.52MTPA로 감축 추진 중(Δ0.79MTPA)

\* SK E&S 지분 37.5% 만큼의 온실가스만 계산·제출, MTPA : Million Ton per Annual

<sup>8</sup> ""친환경인 척하는 그린워싱" SK E&S 가스전 사업 논란", 뉴스펍권, <https://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838>

이 사건 프로젝트를 비롯한 모든 천연가스전 개발은 [개발 및 정제(이상, 상류)<sup>9</sup> - 액화<sup>10</sup> - 운송 - 재기화(이상, 중류)<sup>11</sup> - 소비(하류)]의 전체 과정을 전제로 합니다. 피신고인은 개발, 정제, 액화 단계의 이산화탄소의 포집만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온실가스 배출비중에서 70% 이상을 차지하는 운송, 재기화 공정과 소비단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더욱 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신고인은 가스전 개발, LNG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국내로 운송하고 LNG 발전, 수소 형태로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액화까지의 단계로 한정하여 배출량 일부를 감축한 중간산출물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LNG’로 표현할 수 있다면, 사업주체의 이익과 책임범위 사이에 큰 괴리가 발생하여, 사실상 화석연료의 탄소배출이 용인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프로젝트의 배출량은 전 과정에 걸쳐 측정되어야 하고, 피신고인의 계획에 따르면 일부 과정에서 전 과정 배출량의 극히 일부분이 감축됨에도, CO<sub>2</sub> FREE, 탄소중립 LNG가 도입된다고 하는 것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2) ‘CCS 기술 기반 탄소중립 LNG’ 부분의 허위성

또한 피신고인은 이 사건 프로젝트와 관련, CCS 기술을 통하여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수 있을 것처럼 표현하였으나, 모든 이산화탄소를 완전히 포집할

---

<sup>9</sup> 메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천연가스는 물, 황화수소, 이산화탄소 등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분리하는 정제과정을 거칩니다.

<sup>10</sup> 기체 형태의 천연가스는 대량 운송이 어렵기 때문에, 영하 162°C 이하로 액화시켜 해상 또는 육상 파이프 운송이 이루어집니다.

<sup>11</sup> 영하 162°C 이하의 LNG를 바로 사용하기 어려우므로 온도를 높여 다시 기체로 만드는 재기화 공정이 있습니다.

수 없는 CCS의 근본적 한계와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이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sup>12</sup>

가) CCS 기술로 이산화탄소의 완전한 포집은 불가능합니다.

우선, 피신고인이 계획대로 개발 및 정제과정에서 ‘연소 전’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경우, 발생량의 약 78% 정도가 포집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소갑 제7호증 2019 GoA Knowledge Share Report, CO<sub>2</sub> capture Ratio Report). 천연가스 생산과정에는 이산화탄소 등 불순물을 거르는 과정이 포함되는데, 불순물인 ‘연소 전’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 배출하지 않고 포집해서 저장하는 것이 CCS기술이며,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정에서도 발생량 전체가 포집되지는 않습니다(각주 12 참조).

또한 ‘연소 후’ 이산화탄소는 발생량의 약 55%~72% 정도만 포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소갑 제8호증 How green is blue hydrogen? 논문). LNG 생산에 필수적인 가스처리시설(불순물 정제시설), 압축기, 액화플랜트 가동을 위하여는 천연가스 발전 등으로 에너지공급이 필요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연소 후’ 이산화탄소는 농도가 낮아 현재의 CCS 기술로는 ‘연소 전’의 경우보다 낮은 비율로 포집됩니다.

뿐만 아니라, 피신고인은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400km 떨어진 폐가스전에 보낼 계획인데, 이를 위해서는 파이프를 운송될 수 있도록 먼저 압축기를 통해 압축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압축과정의 에너지공급을 위해 추가 이산화탄소

---

<sup>12</sup> IEEFA(Institute for Energy Economics & Financial Analysis, 미국 에너지 경제·재무분석연구소)는 (i) 처리 플랜트 가동 과정에서 LNG 연소로 배출되는 CO<sub>2</sub>는 100%의 포집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애초에 경제성이 떨어져 포집 시도조차 진행되지 않을 수 있고, (ii) 장거리 파이프라인을 이용한 이송을 위하여는 CO<sub>2</sub>의 압축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온실가스의 배출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CCS가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모두 포집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분석을 하였습니다.



발생 역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CCS 장치 가동을 위한 에너지 공급으로 발생하는 추가 이산화탄소 양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현존 CCS 기술은 기술적으로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CCS 기술은 현재 기술적 확실성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상업적인 CCS 사업은 26건이 진행되고 있으나, 그 가운데 20건은 지중 탄소 유입으로 노후 유전에서 잔존 원유 회수 목적이며, 이산화탄소 배출 방지목적의 CCS 사업은 6건에 불과합니다. 국내의 CCS 기술은 실증을 위한 R&D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으며, 무엇보다도 피신고인이 CCS 기술을 실제 적용한 사례는 부존재합니다(소갑 제9호증 머니투데이 관련 뉴스 기사).

또한 피신고인과 같은 대규모 CCS 적용 사례는 더욱 희소하여, 피신고인보다 큰 사업규모로는 호주 내 최대 CCS 사업체인 셰브론(Chevron)사가 진행한 고르곤(Gorgon) CCS 사업이 유일합니다. 고르곤 CCS 사업은 2016년부터 천연가스 생산 및 정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중 400만 톤을 포집하고 저장할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파이프라인의 부식 등이 문제가 되어 2019년이 되어야 비로소 저장을 시작하였고, 저장 이후에도 이산화탄소가 주입되는 염수층 암반 내 압력 문제가 제기되어 기존 포집량의 1/3 수준인 130만 톤만을 주입하는 데에 그쳤습니다(소갑 제10호증 Gorgon emissions to soar until Chevron fixes restricted CO2 injection 기사).

이처럼 CCS 기술을 통하여도 포집하지 못하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존재할 뿐 아니라, CCS 기술의 불확실성도 불구하고, 피신고인은 CCS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만능 기술인 것처럼 단언하여 묘사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 프로젝트와 같이, 400km가량의 파이프를 이산화탄소가 이동하는 CCS 사업은 전례가 없다는 점과, 폐유전 파이프라인의 부식으로 이산화탄소가 유출될 위험성까지 고려한다면 기술적 불확실성은 더욱 크다고 보입니다.

### 3) ‘전세계에 상용화된 CCS 기술’ 관련 부분의 허위성

피신고인의 이산화탄소 제거와 관련한 광고는 ‘CCS’ 기술이 전세계에서 상용화(常用化)되었다고 적시하였습니다. 상용화는 단순히 해당 기술이 적용된 다수 실험적 사례가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술적, 경제적 실현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개념인데, 현재까지도 CCS 기술은 불확실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CCS 기술의 상용화는 사실이 아닙니다.

[소갑 제5호증 피신고인의 영상 광고 중 해당 부분 발췌]



기술적 불확실성에 대하여는 전항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량 포집은 고사하고 목표 포집량을 달성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이며, 현재 CCS 기술은 고비용으로 인하여 경제성 또한 확보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피신고인과 함께 이 사건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산토스사(社)는 최근 바로사 가스전의 CCS 사업에 최소 16억 달러(약 2조 원 상당)의 비용이 들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피신고인의 이 사건 프로젝트 투자 규모가 14억 달러(1조 6천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경제적 측면에서 CCS 기술의 실현가능성을 확보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피신고인의 광고 내용과는 달리,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CCS 기술이 이용되고 있는 사례는 26건 중 6건<sup>13</sup>에 불과하고, 나머지

<sup>13</sup> 심지어 해당 6건 중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되었던 사업은 최근에 실패한 것으로 밝혀진 고르곤 CCS 사업

20건은 다시 원유를 뽑아서 되파는 일에 활용되는 EOR(Enhanced Oil Recovery)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피신고인은 위 26건 모두가 피신고인이 말하는 CCS 기술인 것처럼 묘사하였던바, 이는 어느 모로 보아도 과장 광고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CCS 기술은 기술적·재정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어 선불리 적용되지 못하고 있거나, 비용 때문에 목표량을 하회하는 포집을 달성하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피신고인은 CCS 기술이 기술적,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상용화된 것처럼 묘사하였던바, 이는 실증적 근거를 결여한 것으로 비진실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 4) ‘이산화탄소 제거, 친환경 블루수소’ 관련 부분의 허위성

가) ‘블루수소’ 생산 시, 이산화탄소는 전량 제거되지 않습니다.

피신고인이 이 사건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생산하고자 하는 수소는 ‘블루수소’에 해당하며, 이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한 수소 생산방식이 아닙니다.

수소는 생산 방식과 친환경성의 정도에 따라, 그레이수소, 블루수소, 그린수소로 구분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표 삽입을 위한 공백]

---

이고, 피신고인이 진행하고자 하는 바로사 가스전의 CCS 계획은 역대 두 번째 규모입니다. 바로사 가스전과 유사한 규모로 진행된 사례는 역대 한 건 뿐입니다.

	생성 방법	이산화탄소(CO <sub>2</sub> ) 배출
그레이수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화석연료 이용</u> (천연가스를 개질하여 생산하는 '개질수소' 또는 정유 또는 석유화학 공정의 부산물로 생겨나는 '부생수소')</li> <li>- 메탄(CH<sub>4</sub>)과 고온의 수증기(H<sub>2</sub>O)의 촉매 화학반응을 통해 생성</li> </ul>	그레이수소 1톤 생산시, 1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블루수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그레이수소와 같이, 화석연료 이용</u></li> <li>- 다만, 이산화탄소를 일부 포집</li> </ul>	CCS 기술을 통하여 이산화탄소를 따로 저장 (이산화탄소의 완전한 제거 불가 <sup>14</sup> )
그린수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화석연료가 아니라,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을 이용</u></li> <li>-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물(H<sub>2</sub>O)을 수소(H<sub>2</sub>)와 산소(O<sub>2</sub>)로 전기분해하여, 수소 생성</li> </ul>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음

즉, 블루수소는 본질적으로 그레이수소와 마찬가지로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에 기반하여 생산되므로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또한 이전 2)항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CCS 기술의 한계와 불확실성, 경제성 문제, 이산화탄소 운송에 따른 추가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하여 이산화탄소 전량을 포집, 저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LNG 생산, 운송 등 공정상 이산화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점 또한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블루수소가 생산과정상 이산화탄소가 제거된 친환경수소로 표현하는 것은 진실에 반합니다.

<sup>14</sup> 소갑 제8호증 How green is blue hydrogen? 논문

소갑 제11호증 Petra Nova is one of two carbon capture and sequestration power plants in the world 기사

나) 블루수소 생산 시, 메탄 역시 배출되어 ‘친환경’ 수소가 아닙니다.

이외에도, 블루수소 생산과정에서 누출되는 메탄 배출량은 그레이수소나 화석연료(석탄, 경유, 천연가스)보다 많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결과, 블루수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천연가스나 석탄 연소보다 20% 많고, 디젤 연소보다도 60% 크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합니다(소갑 제12호증 청정에너지로 주목받는 ‘블루수소’, 친환경 역효과 우려 기사). 따라서 블루수소를 결코 ‘친환경’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피신고인은 블루수소의 환경적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이산화탄소 포집, 제거 측면만 부각하였는데 이는 과장에 해당합니다.

특히 귀 위원회는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의 예시에서, “어떤 상품에 관하여 구체적 설명없이 단순히 “친환경”, “저공해”라고 광고하는 경우 기만적일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2016. 12. 23.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75호,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IV. 사. 참조). 이를 고려하면, 구체적인 설명 없이 단순히 블루수소가 “친환경”이라고 기재한 피신고인의 광고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 5) 소결

이처럼 피신고인의 광고는 미실증 광고로 그 자체로 부당한 광고에 해당합니다. 이와 함께 피신고인의 광고는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요건 역시 충족하는바, 이에 대하여는 다음 항에서 설명합니다.

### 라. 공통요건: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충족

#### 1) 소비자오인성 요건의 충족

들어가기에 앞서, 피신고인의 광고가 표시광고법에서 말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는 2019. 6. 5.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해당 용지에 공장을 건설하는 수분양자가 표시광고법의 소비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표시광고법 제2조제5호에서는 “소비자”를 “상품등을 이용하거나 이용하는자”로 정의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상품 또는 용역을 “상품등”으로 약칭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재화(財貨) 등을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를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인 소비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사업자등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상품등”을 이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는 그 이용 방식이나 이용 목적에 관계없이 표시광고법의 적용대상인 “소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법제처-19-0132 민원회신). 따라서 피신고인이 생산하는 재화(천연가스/LNG)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한민국 국민에 의하여 소비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이상, 피신고인의 광고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표시광고법은 ‘상품등에 관한 자기(사업자)에 관한 사항’을 일정한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광고’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가 지적한 것과 같이, 표시광고법은 상품 또는 용역을 “상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즉 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에 관한 내용이기만 한다면, 해당 광고가 사업자의 특정 상품의 판매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표시광고법위반의 성립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신고인의 광고는 피신고인이 판매하고 있는 LNG 상품 또는 재화, 나아가 가까운 장래에 판매가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수소 제품과 관련된 것일 뿐만 아니라, 해당 재화에서 피신고인(사업자)이 친환경적으로 상품 또는 재화를

생산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표시광고법상의 ‘광고’에 넉넉히 해당합니다.<sup>1516</sup>

요컨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는 광고가 (일반적인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을 경우, 소위 ‘소비자오인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살펴본 것과 같이 피신고인의 광고는 ① 피신고인의 이 사건 프로젝트에서 필연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것<sup>17</sup>임에도, 배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② 위 CCS 기술을 이용하여도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완전히 억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신기술처럼 묘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③ 기술적·경제적으로 안정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CCS 기술이 상용화되었다고 적시하였고, ④ 또한 블루수소가 마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 수소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로 하여금 피신고인이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LNG 및 수소를 생산하다는 인상을 형성해, 소비자오인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특히, LNG 및 수소생산, CCS 기술에 관한 전문적 정보가 피신고인에 일

<sup>15</sup> 주지하시듯, 최근 많은 기업들은 특정 상품의 판촉을 위한 광고보다는 기업 자체를 브랜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소위 ‘브랜드 광고’)를 다수 제작·송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표시광고법상의 ‘광고’를 특정 상품 또는 재화의 판촉을 목적으로 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경우, 브랜드 광고는 표시광고법에 포섭될 수 없어 규정의 큰 공백을 낳게 될 것입니다.

<sup>16</sup>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한국인삼공사가 판매 상품이 아닌 ‘자신의 회사를 홍보(소위 ‘브랜드 광고’)’함에 있어 (주)한국인삼공사의 사이버홍보실 - 정관장만화 카테고리에서 마치 자기가 공기업인 것처럼 “정부가 관할하는 공장”, “진짜 관제품”, “정부공기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안에 있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사건번호: 2004전사1208).

<sup>17</sup> 앞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피신고인은 이 사건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은폐·축소하였습니다.

방 편재되어 있음에도, 피신고인이 CO<sub>2</sub> FREE, 탄소중립, Carbonless, 친환경 등 용어를 명확한 기준 없이 사용하여, 피신고인의 광고가 소비자오인을 유발할 여지는 더욱 크다고 할 것입니다.

## 2) 공정거래저해성 요건의 충족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는 광고 그 자체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공정거래저해성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합니다.

피신고인의 LNG 도시가스 공급 및 LNG 직도입 시장에서의 점유율, 자본력 및 모기업 SK 주식회사의 브랜드 인지도를 감안하면, 광범위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피신고인의 LNG 및 블루수소 생산의 친환경성을 부각하는 광고를 지속할 경우,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해당 시장에서 피신고인과 연관된 재화를 소비하게 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sup>18</sup> 이는 타사의 천연가스/LNG 및 수소와의 경쟁관계에서는 물론, 천연가스/LNG와 풍력, 태양광 등 다른 친환경 재생에너지 지원,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와의 관계에서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방해할 것으로 보입니다.

<sup>18</sup> 특히 최근 RE100이 대두되면서, 친환경 전력으로 만든 공산품을 사용하겠다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즉 소비자들이 구매 결정을 함에 있어, 해당 공산품이 어떠한 에너지를 이용하여 제작되었는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로 여기고 있는바, 피신고인의 광고는 직·간접적으로 소비자의 구매 결정을 유도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마. 개별요건: 피신고인 광고의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위반

### 1) 사업자 자신에 관한 환경관련 표시·광고 지침의 위반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은 사업자가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환경관련 광고는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자가 자신에 관하여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라 광고하였고 실제로도 실질적으로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을 상쇄할 만큼 환경에 유해한 사업상 활동을 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피신고인의 경우, 피신고인은 자신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LNG, 수소를 생산하는 ‘친환경기업’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펴본 것과 같이 오히려 LNG와 블루수소의 생산 및 운송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나아가 CCS만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100% 포집,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며, 현재 수준의 CCS는 이산화탄소를 전량 포집, 제거할 기술적 확실성이나 경제성 또한 부존재합니다. 즉 이 사건 프로젝트와 같이, 신규 가스전에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환경적으로 유해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 넷제로(net-zero) 글로벌 에너지 로드맵” 보고서에서,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천연가스의 수요는 현재보다 55% 감소할 것이고, 2021년부터는 신규 가스전에 대한 투자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피신고인이 일견 환경 친화적인 행보를 걸은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상쇄할 것이 분명한 이 사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바 피신고인의 ‘친환경 기업’과 관련한 광고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함이 자명합니다.

## 2) 특정용어 및 표현의 사용 지침의 위반

친환경의 의미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친환경’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분야에서 유행처럼 사용되고 있고, 통일된 사전적 정의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이는 기존 또는 다른 것에 비해 자원을 절약하거나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9. 8. 20. 선고 2009누 2155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과 같이 의미가 포괄적이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용어나 표현을 광고표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이 가지고 있는 환경적 속성이나 효능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피신고인은 이 사건 프로젝트와 관련, ‘친환경 LNG’ 혹은 ‘친환경 블루수소’라는 표현 사용의 근거로 이산화탄소를 포집, 제거하는 점을 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프로젝트 LNG 및 수소 생산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불가피하며, CCS 기술 역시 이산화탄소를 전량 포집, 제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또한 블루수소 생산 과정에서 메탄의 배출량은 그레이 수소나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보다 많습니다. 즉, 블루수소가 그레이수소에 비하여 이산화탄소 배출 측면의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친환경’ 수소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은 자명합니다.

따라서 피신고인의 ‘친환경 블루수소’라는 광고 표현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거짓·과장 광고라 할 것입니다.

## 바. 개별요건: 피신고인 광고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위반

### 1) 제조방법에 관한 표시·광고 일반지침의 위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제조방법에 관하여 표시·광고할 경우 사실과 다르게 또는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가 오인할 여지를 만들어서는 아니됩니다.

그러나 살펴본 것과 같이, 피신고인은 이산화탄소 배출 없는 LNG 및 수소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 친환경 LNG, 친환경 수소로 광고하였습니다. 이는 근래의 소비자들이 화석연료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생산방식의 물품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친환경적인 방법이 아님에도 친환경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2) 특징에 관한 표시·광고 일반지침의 위반

또한 위 고시는 사업자가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의 특징을 표시·광고할 경우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광고하거나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가 오인할 여지를 만들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신고인은 자신이 생산하는 LNG의 공정과정은 어떠한 이산화탄소도 배출하지 않고 부수적으로 블루수소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제거되어 매우 친환경적이라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들은 피신고인이 생산하는 화석연료가 다른 경쟁업체보다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생산된다고 오인할 여지가 상당합니다.

사. 개별요건: 피신고인 광고의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위반

귀 위원회는 지정고시에서 사업자가 진실의 일부를 누락하여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하는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지 모호한 경우, 기만적인 표시·광고 및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한다면, 해당 광고는 거짓·과장 및 기만적 표시·광고에 중복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피신고인의 광고는 거짓을 말함과 동시에 정보의 일부를 은폐하였고,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축소한 것에 해당하므로 기만적인 표시·광고라 할 것입니다.

1)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사항에 대한 은폐 또는 누락

위 고시는 제품 등의 품질·종류·수량 등에 관한 중요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또는 누락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신고인은 피신고인이 LNG를 생산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탄소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하였습니다. 특히 피신고인은 공정 이후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설명은 철저히 누락하면서 “탄소중립”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신고인의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은 자신이 소비할 연료가 어떠한 경우에서도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라 믿고 구매선택에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피신고인은 ‘블루수소’가 생산 과정에서 화석연료보다 많은 메탄을 발생시킨다는 점에 대하여도 언급하지 아니하면서, ‘블루수소’를 친환경적인 연료

인 것처럼 묘사하였던바, 어느 모로 보아도 피신고인의 광고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합니다.

## 2)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대한 축소

위 고시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은폐 또는 누락하지 않고 표시 또는 설명하였으나 지나치게 생략된 설명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상의 지적 능력을 지닌 소비자가 표시된 설명만으로는 이를 사실에 부합되도록 인식하기 어렵게 표시·광고하는 경우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피신고인은 CCS 기술을 이용한 사업이 전 세계에서 26건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서 CCS 기술의 상용성을 광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과 같이 CCS 기술은 그 자체로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위 26건 중 20건은 다시 원유를 뽑아서 되파는 데에 CCS 기술을 사용하고 있을 뿐(EOR), 이산화탄소를 제거한 연료를 생성하는 데에 CCS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은 6건에 불과합니다. 아울러 피신고인은 CCS 기술이 진행되었던 사업 중 가장 큰 규모였던 고르콘 CCS 사업이 실패하였다는 점과, CCS 기술이 경제성이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는 점은 고의적으로 축소하여 광고하면서 CCS 기술을 친환경 원료 생산을 위한 확실한 대안처럼 광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기만적인 광고에 넉넉히 해당합니다.

### 아. 소결

최근 소비자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친환경’, ‘CO<sub>2</sub> FREE’ 혹은 ‘저탄소’ 제품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을 보입니다(소갑 제13호증 가치소비 관련 기사). 그러나 영국의 경쟁당국인 경쟁시장국(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의 조사에 따르면, 친환경 주장 광고의 약 40%가 위법한 과장, 기만 광고에 해당

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sup>19</sup> 이에 영국 경쟁시장국은, 친환경 주장 광고의 진실성, 정확성, 중요 정보의 생략 및 은폐 금지, 입증 등을 요구하는 Green Claim Code를 지정하여 기업광고를 규제하고, 관련 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2년에 처함을 강조하며, 2022년부터 친환경 주장 광고를 대상으로 엄격한 조사에 착수할 것임을 밝힌 상황입니다.

피신고인의 현재와 같은 광고가 지속될 경우, 소비자들은 기후변화를 우려해 친환경 제품을 소비하려던 본래 목적과는 달리, 이산화탄소를 다량 배출하는 화석연료 제품을 소비하는 오류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그러한 제품을 생산하는 피신고인의 매출 증대와 LNG, 블루수소 시장 확대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일반 소비자들이 LNG 공정 전 과정, 수소 생산방식, CCS 기술의 세부를 모두 인식하기는 어려워, 피신고인의 광고 표현과 소비자 결정 사이의 인과관계는 더욱 밀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결정권 보호와 탄소 저감 정책에 부합하는 공정한 시장질서 수립을 위하여, 피신고인의 ‘그린워싱’ 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은 매우 큽니다.

귀 원께서는 이상의 점을 고려하시어 면밀한 조사에 나아가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5. 결론

신고인은 이상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피신고인을 표시광고법위반으로 신고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주셔서 피신고인의 표시광고법위반행위가 중단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sup>19</sup> "Competition watchdog gives firms deadline on ending 'greenwashing'",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business/2021/sep/20/competition-watchdog-gives-firms-deadline-on-ending-greenwashing>

## 첨 부 자 료

- |               |  |
|---------------|--|
| 1. 소갑 제1호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단법인 기후솔루션)  |
| 1. 소갑 제2호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스케이이엔에스 주식회사)   |
| 1. 소갑 제3호증    | 관련 기사  |
| 1. 소갑 제4호증의 1 | 피신고인의 보도자료   |
| 1. 소갑 제4호증의 2 | 피신고인의 보도자료   |
| 1. 소갑 제5호증    | 피신고인의 영상광고   |
| 1. 소갑 제6호증    | 의원 보도 자료   |
| 1. 소갑 제7호증    | 2019 Goa Knowledge Share Report, CO <sub>2</sub> Capture Ration Report                 |
| 1. 소갑 제8호증    | How green is blue hydrogen? 논문   |
| 1. 소갑 제9호증    | 머니투데이 관련 뉴스 기사   |
| 1. 소갑 제10호증   | Gorgon emissions to soar until Chevron fixes CO <sub>2</sub> injection 기사              |
| 1. 소갑 제11호증   | Petra Nova is one of two carbon capture and sequestration power plants in the world 기사 |
| 1. 소갑 제12호증   | 청정에너지로 주목받는 ‘블루수소’, 친환경 역효과 우려 기사  |
| 1. 소갑 제13호증   | 가치 소비 관련 기사  |

## 첨 부 서 류

- |           |      |
|-----------|------|
| 1. 위 첨부자료 | 각 1통 |
| 1. 위임장    | 1통   |

2021. 12. 22.

신고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태림

담당변호사 하 정 림



담당변호사 김 도 현



담당변호사 안 수 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